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나1030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나103011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1. 20 선고 2021가단4408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도

변론종결 2024. 3. 15.

판결선고 2024. 5. 24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. 1. 20. 선고 2021가단4408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와 D(AC생, 주소 김해시 AD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25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0. 6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. 2. 26. 접수 제2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. 6. 8. 접수 제7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 및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 [추가하는 부분]

- 2023. 10. 12. 창원지방법원은 D의 AE에 대한 대여금 사건에서 850,198,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2023가합100391 판결), 위 판결은 2023. 11. 2. 확정되었다. 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과와 피고의 2024. 4. 18.자 합의 관련 의견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, D가 AE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으므로, 위 채권을 D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(대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).
-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), 2020. 2. 25. 및 2020.

6. 8.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D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 및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

별지